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의 2015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 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지적사항 : 별첨
2. 기타의견 : 별첨

2015년 4월 16일

학교법인 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감사 한 명 철 (인)

감사 양 상 용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처장

성 명 박 신 애

학교법인 그리스도의교회학원 감사 보고서

-일 시: 2015. 4. 16~17(2일간)

-장 소: 법인사무실, 그리스도대학교 회의실, 등촌중학교 교장실

-감사인: 한명철, 양상용 감사

○ 총 평 학교용지변경, 대학의 강의실부족, 평생교육원과 보육교사교육원의 위치변경에 따른 수강자 감소, 2015학년도 입학정원미달, 재학생 충원률 부족 등으로 적자 예산편성에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지금까지 관행과 관습 속에 위기의식이나 책임지는 풍토가 없고 어쩔 수 없다는 당시 상황만 설명하며 이미 알려진 사항도 수사 진행이라며 감추려는 형태는 유감입니다. 예년보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으나 감사기간 동안에도 팽배한 냉소주의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발전과 구성원간의 화합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화합을 위한 리더십과 소통을 위한 더 많은 대화의 기회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 학교법인

□ 우수사례: 강서노인 복지관 및 시청어린이집, 원효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은 당 법인 소속으로서 서울시와 해당구청장으로부터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없고 민원도 없이 매우 양호한 운영을 하고 있음.

□ 지적사항: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사립대학제도과-2025(2012.04.03.) 등촌중학교 다목적강당 건축 관련 1,360,819,000원을 사립학교법 제29조를 위반하여 교비회계로 환수하고 관련자 징계조치(정관 제59조 이하 68조)하라고 지시된 위 사안에 대하여 대학총장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한 소명자료 투자경위 과정에 대학총장과 중학교 교장이 협의를 통하여 등촌 중학교 다목적강당 사용 합의를 작성하여 진행하고 투자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교비회계로 환수지시는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 교비집행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인에서 지시하고 연루된 듯한 대학의 구두 답변 속에는 조속한 대책과 결단이 없을시 등촌중학교와 법인에 문제발생 가능성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 이사회 의결로 개명논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결정을 계속 미루는 미온적 대처로 논의에 대한 결과를 학기가 바뀌어도 진행사항 및 결과나 실적을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치 못하고 그리스도의교회 내 일부 기관으로부터 의문을 제기 받게 됨은 매우 유감입니다.

□ 시정을 요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2013. 7. 22자 및 2013. 8. 21 통보된 감사처분 미이행 (학교용지미결정)으로 행정제제 예고에 대한 사항의 보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이사회의 적극적 대처를 요합니다.

□건의사항: 학교법인 산하기관의 정기적모임(합동회의)을 통하여 기관의 당면 사항들을 이해하고 협조 및 홍보와 소속감을 갖도록 1차 건의하였으나 시행이 없어 모임을 바라오며

- 화곡어린이집 원장은 고령으로 교육기관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대학 및 중학교의 정년 형평과 배치되므로 이사장님의 자진사퇴 권고를 재 요망합니다.